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0. 19 선고 2021가단330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소송대리인 B

2. C

피 고 1. D 주식회사

2.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윤삼수, 이한나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9,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 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9,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106,271,0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87,051,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C에게 19,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C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2021. 1. 14.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물품대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D이 원고 C로부터 그 지급청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인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 중 2021.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C에게 미지급 대금 19,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7. 1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1) 원고 A은 'F'라는 상호로 산업용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C은 'G'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2) 피고 D은 통신부품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 3) 피고 D은 2021. 2. 25.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에게 매매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4) 피고 E은 2021.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및 H 소유의 구미시 I 공장용지 2,357.2㎡ 등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5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E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제3항 및 제4항 각 기재와 같은 가액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E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그 당시 시가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또한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75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설령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 4년 정도 서로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서로의 채무현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E의 대표이사 K과 피고 D의 대표자 사내이사 L 역시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 거래관계를 비교적 장기간 지속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서로의 채무현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 A이 2021. 2. 5. 피고 D에 대한 87,051,02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D을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0591호로 피고 D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1. 2. 1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압류 신청의 인용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에는 위 인용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E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③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피고 E에게 2021. 1. 14. 71,775,400원¹⁾, 2021. 1. 29. 20,000,000원, 2021. 2. 9.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각 지급내역은 피고 D이 피고 E에게 미수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E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직전까지 이루어진 피고 D의 위와 같은 미수금 지급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D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라고 신뢰하여 피고 D의 채무현황을 의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들은, 매매대금이 거액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전문적인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직거래 형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이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사해행위를 공모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매매대금이 거액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역시 그 매매대금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중개수수료의 절감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유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사해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2021. 2. 26.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고 D으로,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선행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E은 피고 D에 대한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피고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규대

가 없다.

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 E의 위와 같은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 중소기업은행 M 지점 소속 직원 J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J은 피고 E의 신규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고 D의 기업 신용도 역시 함께 검토하였다.

○ 검토 당시 J은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D 담당자로부터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서 기한 연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여 J은 피고 E에 대한 신규대출을 시행하였다.

○ J이 2021. 1.경 피고 D이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 피고 E의 대표이사 K은 중소기업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할 당시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가 얼마인지,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관해서 문의한 사실이 있다.

⑥ J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의하면,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관하여 상당한 실무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 D의 신용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은행 및 피고 E은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의 판단을 신뢰하여 피고 E에 대한 신규대출의 시행 여부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⑦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 D에게 실제로 계약금 540,000,000원을 지급하고,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별지 1]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대구 북구 N에서 'F'라는 상호로 산업용부품재생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C는 대구 달서구 O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참조).

피고 D 주식회사는 구미시 P에서 자동화기기, 설계, 프로그램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원고들로부터 물품대금, 장비설치대금 등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갑 제2호증의 1 참조),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한 법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입니다(갑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1, 2 각 참조).

2.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제권

가. 원고 A의 물품대금채권

원고 A은 2020. 6. 2.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전기계로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납품 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한 후 2020. 6. 2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총 97,051,0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1 및 제6호증 각 참조).

하지만 피고 D 주식회사는 2021. 1. 13. 물품대금의 일부인 10,000,000원만 결제해 주고 나머지 잔금 87,051,020원은 결제하지 않았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에 원고 A은 지속적으로 위 잔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지급을 하지않자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2021. 2. 24. 대구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 참조).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

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 111226 물품대금 사건으로 소계속 중에 있습니다(갑 제7호증의 2 참조).

나. 원고 C의 납품설치대금채권

원고 C은 2020. 6.경 피고 D 주식회사에 마스크 제작설비 프로그램, 마스크 설비 셋업 등을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고 대금은 납품 및 설치 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원고 C은 2020. 6.부터 2021. 2.까지 피고 D 주식회사에 총 51,370,000원 상당의 마스크 제작설비 프로그램, 마스크 설비 셋업 등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였습니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각 참조).

하지만 피고 D 주식회사는 납품 및 설치 대금으로 2020. 7. 2. 7,150,000원, 같은 해 9. 1. 10,000,000원, 2021. 1. 14. 15,000,000원 등 총 32,150,000원의 대금만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19,2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각 참조).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위 납품 및 설치대금의 잔금인 19,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가 마지막으로 결제를 한 날의 그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의 사해행위

원고 A은 2021. 2. 5. 물품대금 87,051,020원의 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사업자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17. 인용이 되었으며(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 각 참조), 2021. 2. 24. 대구지방법원에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채권가압류의 집행 이후 제3채무자 전술서를 통해 확인한 피고 주식회사 D의 재산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569,000원이 전부였으나 그마저도 소의 중소기업은행의 반대채권으로 인해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C도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납품설치대금 청구를 위해 소 제기를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및 납품설치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21. 2.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장기소 2021. 2. 26. 접수 제12256호로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당시 거래가액은 2,200,000,000원이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각 참조).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최근 피고 D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한채 근로자들을 정리하여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위 때에 당시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거나 위 때때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의 채권가압류 결정 이후 일주일만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E에게 매매로 처분하였는데 이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의 피고 D 주식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각 참조).

4. 사해의사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 D 주식회사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처분을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D 주식회사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E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 청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 및 납품설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E은 2021. 2. 26.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 2. 26.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1, 2 각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은 2021. 2. 26.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 2. 26.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원물 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E 은 원고들에게 손해행위로 위소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결 어

이에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구미시
공장용지 4474㎡

2. 경상북도 구미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공장
1765.25㎡

이상

1) 원고들은 위 71,775,4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사해행위를 염두에 둔 금전거래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